

변경대비표

1. 투자신탁의 명칭: 이스트스프링 퇴직연금 업종일등 증권모투자신탁[주식]

2. 변경 사유:

-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(2019.06.25, 2021.10.21) 반영

3. 효력발생(예정)일: 2023 년 03 월 30 일

4. 변경 주요 내용:

[신탁계약서]

항 목	정정 사유	정정 전	정정 후
제14조(수익자 명부)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<u>한국예탁결제원</u>에 위탁하여야 한다. ② 집합투자업자는 <u>한국예탁결제원</u>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, <u>한국예탁결제원</u>은 관련법령·신탁계약서·위탁 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 ③ <생략> ④ 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<u>한국예탁결제원</u>에 통지하여야 한다. ⑤ <u>한국예탁결제원</u>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실질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.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<u>한국예탁결제원</u>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명부("실질수익자명부"라 한다 이하 같다)를 작성하여야 하며,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 및 실질수익자의 성명(자투자신탁구의 경우 자투자신탁의 신탁업자)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.	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<u>전자증권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(이하 "전자등록기관"이라 한다)</u>에 위탁하여야 한다. ② 집합투자업자는 <u>전자등록기관</u>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, <u>전자등록기관</u>은 관련법령·신탁계약서·위탁 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 ③ <현행과 동일> ④ 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<u>전자등록기관</u>에 통지하여야 한다. ⑤ <u>전자등록기관</u>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.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<u>전자등록기관</u>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,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(자투자신탁구의 경우 자투자신탁의 신탁업자)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.
제23조(운용행위 감시의무 등)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, 기재 보완	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<u>제3영업일</u>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제269조제2항이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. ③ <생략> ④ <생략>	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<u>3영업일</u>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제269조제2항이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. ③ <생략, 현행과 같음> ④ <생략, 현행과 같음>

		1.~2.<생략> <추가> 3.~4.<생략> <추가>	1.~2.<생략, 현행과 같음> 3.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4.~5.<생략, 현행과 같음> 6. 제1항의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7.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26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
제25조(판매가격)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제X영업일	X영업일
제27조(환매가격 및 환매방법)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제X영업일	X영업일
제30조(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)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① 집합투자업자는 제X조의 규정에 따른 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.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·게시일 전날의 <u>대차대조표</u> 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"순자산총액"이라 한다)을 그 공고·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, 1,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.	① 집합투자업자는 제X조의 규정에 따른 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.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·게시일 전날의 <u>재무상태표</u> 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"순자산총액"이라 한다)을 그 공고·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, 1,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.
제32조(투자신탁의 회계감사)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① <생략> 1. <u>대차대조표</u>	① <생략, 현행과 같음> 1. <u>재무상태표</u>
제35조(상환금 등의 지급)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<u>한국예탁결제원</u> 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	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<u>전자등록기관</u> 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
제44조(투자신탁의 해지)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제X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<u>한국예탁결제원</u> 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.	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제X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<u>전자등록기관</u> 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.
제49조(공시 및 보고서 등)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<u>한국예탁결제원</u> 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,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	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<u>전자등록기관</u> 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,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

		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.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<u>한국예탁결제원</u>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.	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.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<u>전자등록기관</u>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.
--	--	--	--